



자동차...구매냐, 리스냐?

사례

X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개인 생활 목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사려고 합니다.

자동차 차종을 선택한 후 구매 방법을 선택해야 했는데 X는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Down payment)하고 나머지는 할부금(Finance)으로 갚아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정에서 자동차 중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중개인에 의하면 자동차 리스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자동차 구매금액은 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개인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많은 사람이 구매보다 리스를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리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X씨는 취득을 일단 보류하고 회계사를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구매와 리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는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고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원금과 이자를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자동차 리스는 리스회사가 법적 소유권을 갖고 소비자는 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내면서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동차 경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항목에는 등록비, 연료비, 보험료, 대출금 이자,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자동차를 리스할 때에는 리스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차량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 또는 리스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경비 처리되는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형태와 절세방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만약 세법에서 취득 형태에 따라서 비용 공제 여부를 달리 적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한편, 세법상 자동차 경비처리시 주의할 점으로 passenger vehicle에 대한 비용 처리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assenger vehicle은 주로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9인승 이하인 소형차, 세단, 스포츠 차량, 고급 자동차 등과 사업 목적 사용비율이 높지 않은 트럭, 밴 또는 미니밴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assenger vehicle에 대해 세법에서는 비용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의 이자는 매월 \$300을 넘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차량 가격이 \$30,000을 넘을 땐 \$30,000과 이에 해당하는 GST 및 PST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리스비에 대해서는 매월 \$800과 이에 대한 GST 및 PST 금액을 한도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assenger vehicle에 대한 GST/HST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credits) 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법인이 passenger vehicle을 구매한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 \$30,000에 대한 GST/HST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50% 이하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GST/HST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가 passenger vehicle을 구매한 경우에는 90% 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 \$30,000에 대한 GST/HST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10% 이하일 때는 GST/HST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10%와 90%의 사이일 경우에는 사용비율에 따라 GST/HST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자동차 취득 시점에서 GST/HST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경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으로 국세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적 사용 부분이 경비 처리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동차별 사용기록을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해 놓아야 하고,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자동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회계사로부터 자동차에 대해 세법상 궁금했던 점을 알게 된 X씨는 다시 자동차 중 개인을 찾아가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다시 자동차를 돌려줘야 하는 리스보다는 구매하면서부터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본인의 성향과 경제적 이익에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세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특정 형태의 취득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편견으로 절세보다는 계약 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적인 효용을 생각해서 ‘구매냐, 리스냐?’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